

[서식 예] 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

피미성년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청구

청 구 인 ○○○ 주민등록번호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 전화·휴대폰번호: 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청 구 취 지

사건본인이 2013. 9. 30. ○○병원에서 ○○ 시술을 받는 것에 대하여 미성년후 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동의하는 것을 허가한다.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워 인

- 1.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3. 00. 00. ○○법원 2013느단0000호로 미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,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.
- 2. 그런데, 사건본인은 현재 ○○병원에서 ○○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이 므로 독자적인 동의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.
- 3. 따라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대신하여 위 수술에 동의를 하려고 합니다.



첨 부 서 류

1.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(사건본인) 각 1통

2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 각 1통

3. 기타(소명자료) ○통

2013 . O. O.

위 청구인 〇〇〇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

제출법원	사건본인(피후견인이 될 사람)의 주소지의 가정법원(지방법원, 지원)		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	관련법 규	민법 제9472 가사소송법 가사비송사건	제2조제	,
불복절차 및 기간	・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(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1항 제1호 제다목,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, 민사소송법 제444조) ·미성년자, 미성년자의 부모와 친족, 미성년후견인, 미성년후견감독인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즉시항고 가능(가사소송규칙 제67조 제1항 제3호)				
비 용	・인지액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청구인 수×3,700원(우편료)×8회분				